

답변서

사 건 2020재나32 기타(금전)

원 고 임그루

피 고 케이티노동조합

원고의 재심청구에 대하여 피고 소송대리인은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.

재심청구취지에 대한 답변

- 1.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.
 - 2.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.
-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

재심청구원인에 대한 답변

1. 원고가 재심청구의 대상으로 한 판결은 서울고등법원 2019. 12. 13. 선고 2019재나50 사건이고, 재심사유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호 '법률에 따라 판결법원을 구성하지 아니한 때'입니다.

2. 그러나 위 재심대상판결의 이유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,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제1심의 소는 민사사건이고,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심판

결 및 그 항소심판결에 대한 재심판결, 재심대상판결은 모두 적법한 재판권을 가진 법원이 한 판결에 해당하고, 이를 이유로 종전 재심청구는 기각된 바 있습니다.

3.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또 같은 사유를 들어 똑 같은 재심의 청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. 결국 이 사건 원고의 주장의 재심사유는 전혀 이유 없다 할 것입니다.

4. 이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시어, 원고의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2020. 6.

피고 소송대리인

법무법인 탑

담당변호사 이승연

담당변호사 이윤진



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귀중